

제2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21.9.10.)

조례안·일반의안
심사보고서



거창군의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
2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6
3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9
4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5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6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7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8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9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0
10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11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12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13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67
14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목 차

15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16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6
17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3
18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7
19	「설화 구전관」 민간위탁 동의안	115
20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 동의안	118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권해도]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및 필수조례를 일괄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 보호 및 법령 적합성 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정비

- 가) 정부합동평가 대상 민간위탁 협약 시 공증의무 규정 삭제
(안 제1조·제2조)

- (1)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및 공증비용 전가 문제

(2) 개정 조례 2건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행정과)
- 「서북부경남거점산자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농업기술센터)

나) 수수료를 수입증지로만 납부하도록 한 규정 삭제

(안 제3조·제4조)

(1) 수수료 납부수단을 제한 ⇒ 납부수단 다양화 또는 해당규정 삭제

(2) 개정 조례 2건

-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재무과)
-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건설과)

2) 법제처 필수조례 정비

가) 정부합동평가 대상 필수조례 보완(안 제5조·제6조)

(1)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행 : 특별교통수단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규정
- 신설 : 보행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특별교통수단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로 기능 대행 규정 명확화

(2)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위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전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만 인용하던 것을 위임 시행령·시행규칙을 명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가. 민원인 권익보호 및 법령 적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
법규 정비 실적은 정부합동평가 지표대상으로 행정안전부
발굴 기획정비과제 및 법제처 법령위임 필수조례 등을 연내
개정·시행하고자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나. 상위법과의 일치 및 민원 편의를 개선하고자 정비하는 것으
로 조례 일괄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1.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2조(「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서북부경남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후단을 삭제한다.

제3조(「거창군 수입증지조례」의 개정) 「거창군 수입증지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 납부방법)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거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따르되 군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2호를 각각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보행편의증진위원회)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거창군 보행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을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이규섭]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수당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함

나. 주요내용

- 1)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2) 수당과 여비 지급기준을 정함(안 제2조·제3조)
 - 가) 수당 :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준용
 - 나) 여비 :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의 출장 시 4급 공무원에 해당 하는 여비
- 3)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경남도 특정감사 정비과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가. 적극행정 실현 소극행정 경남도 특정감사 정비과제 사항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시험위원 등의 수당과 여비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임 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이 타당하며,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거창군 시험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거창군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른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등이 시험과 관계있는 출장할 때에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10.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8.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이규섭]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의무위반 시에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할 경우 그 반납 기준을 정함

나. 주요내용

- 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함(안 제1조)
- 2) 의무위반 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을 정함(안 제2조)

- 가) 대상 :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거창군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나) 기준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
- 다) 적극행정실현 소극행정 경남도 특정감사 정비과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중호]

- 가. 적극행정 실현 소극행정 경남도 특정감사 정비과제 사항으로 위탁교육훈련 공무원의 의무위반 등에 대한 훈련비 반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임 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나.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거창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거창군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 별표 2의 반납액 산정기준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이규섭]

가. 제안이유

- 출향인의 범위와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의 재정지원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출향인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가) 현행 : 거창군 출신인 사람
 - 나) 변경 : 거창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주소지를 두었던 사람
- 2)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정함(안 제3조)

- 3)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를 정함(안 제4조)
- 4) 출향인의 지위, 포상, 준용, 시행규칙 삭제(현행 제3조, 제6조~제8조)
 - 가) 법령 및 조례 중복·재기재에 불과한 불필요한 규정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가. 출향인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의 대상, 범위, 방법을 규정하고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여
- 나. 향우회 교류 관련 사업이나 행사시 법에 저촉됨 없이 원활히 추진토록 하기 위함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서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거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거창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
 - 가.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
 - 나.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교류·협력사업)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과 출향인·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출향인과 향우회를 대상으로 군 주요 시책 및 축제·행사 등의 홍보
2. 출향인과 향우회 활동의 홍보
3. 군 농산물·특산물 판매 및 홍보
4. 출향인과 그 가족의 고향 방문 사업
5. 출향인과 향우회 대상 간담회
6. 그 밖에 군과 출향인·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군수는 군과 출향인·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출향인 및 향우회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출향인과 향우회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2. 군 주최의 간담회, 고향 방문 사업, 군 홍보 행사 등에 참여한 출향인 및 향우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식비, 숙박비, 차량 임차비 등 경비와 홍보 기념품 지원
3. 향우회 정기총회 시 홍보기념품의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문화체육 행사 보조금, 교류협력 행사 필요 경비 지원

나. 관련 조문: 제4조(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42	42	42	42	42	210

3. 관련 의견

전국향우연합회체육대회 시 보조금 지급 및 향우회 자녀 고향 방문사업 등 교류행사 시 식비, 숙박비, 버스임차료 등(행사 운영비)을 지급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모범 향우 감사패 제작: 6,380천원

나. 차량임차

1) 고향희망심기 고향방문(향우체육대회 등): 8,400천원

2) 지역향우회 정기총회 등 참석: 2,100천원

라. 향우 고향 문화탐방: 8,000천원

마 전국거창향우연합회 한마음 체육대회: 17,000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이규섭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이규섭]

가. 제안이유

- 거창경찰서에서 방범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자율방범대에 여성자율방범대를 추가 등록함에 따라 여성자율방범대를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자율방범대에 여성자율방범대를 포함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1호)
- 2) 중복·재기재 규정 삭제(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가. 거창경찰서에서 방법활동을 1년 이상 수행해 온 자율방범대에 여성자율방범대를 추가 등록함에 따라 여성자율방범대에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나. 여성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봉사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에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 임**
- 1. 거창군 자율방범대 ·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 조직”을 “주민 조직(여성자율방범대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율방범대”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방법의식이 투철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법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u>주민 조직</u>을 말한다.</p> <p>2.~3. (생략)</p> <p><u>제6조(포상) 군수는 방법활동 등을 통해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대원에게 「거창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자율방범대”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방법의식이 투철한 해당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법 순찰 및 지역안전예방 활동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u>주민 조직 (여성자율방범대를 포함한다)</u>을 말한다.</p> <p>2.~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여성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나. 관련 조문: 제2조(정의), 제4조(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행정과장 이규섭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이규섭]

가. 제안이유

-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 퇴직 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
- 2)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가. 본 조례안은 거창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창군 퇴직공무원들이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 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지원대상인 거창군 행정동우회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다. 지방행정동우회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1.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군 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예산
의 범위에서 거창군 행정동우회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나. 관련 조문: 제2조(지원대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간 50,000천원 이하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대상임

작성자: 행정과장 이규섭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이규섭]

가. 제안이유

-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퇴직 경찰공무원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의 희생·공헌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
- 2).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가. 본 조례안은 퇴직 경찰공무원들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의 희생·공헌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에 따라 지원대상인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다. 거창재향경우회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하여 지역 내 치안 협력과 안전 사회 조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1.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 대한 봉사와 거창군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거창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제2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창군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경우회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 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사업
4. 국가 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이규섭]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기준과 지급정지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장학금 지급으로 이장의 사기를 북돋우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함(안 제2조)
- 2) 읍면장 추천, 선발기준, 정원을 정함(안 제3조~제5조)
- 3) 장학금액, 지급, 지급정지 사유를 정함(안 제6조~제8조)

- 가) 금액 :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
- 나) 지급정지 : 이중 지급 제한, 이장신분 상실, 장학생의 퇴학 등
- 4)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규칙을 삭제함(현행 제9조·제10조)
 - 가) 특별회계 : 「지방재정법」 부칙(법률 제12687호
2014.5.28.개정) 제4조에 따라 이미 실효된 규정임
 - 나) 규칙 : 「지방자치법」 제23조 중복·재기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가. 본 조례는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정액 지급 규정을 마련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 나. 주요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중·고등학교 ⇒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확대하였고,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규정, 장학금액의 범위 규정,
지급정지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
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다. 검토결과 거창군이장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조례
개정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
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 임 1.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년 이상 근속하고 품행이 단정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일 것
2. 이장의 자녀로서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일 것

제3조(추천) 읍·면의 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 추천 인원이 정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1.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수
2. 학교 간
3. 읍·면 간

4. 이장 한 명당 선발 자녀 수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연 2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3.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수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해당 학생의 장학금을 초과하는 다른 장학금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
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했을 때
3.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 조문: 안 제6조제1항

나. 비용발생 요인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1. 중학생: 연 2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연 50만원 이내
3. 대학생: 연 100만원 이내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2021년도 이장 자녀 장학금 본예산 3백만원 확보

작성자: 행정과장 이규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정현수]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표준수수료) 규정을 정비·삭제하고, 국가보훈처의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요청에 따라 누락 된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 정비함(안 제3조·별표 1)
 - 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명시된 수수료 삭제

- 2) 수수료 징수방법 확대함(안 제5조)
- 3)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가. 본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전부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표준수수료 규정을 정비·삭제하고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 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제증명 등 수수료 금액 정비, 안 제5조에서는 수수료 징수 방법 확대, 안 제7조에서는 수수료 감면대상(보훈대상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신규조문 대비표**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 각종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른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기준)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1통 또는 1명당 1건으로 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등은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징수방법)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각종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신과 직접 관련되어 신고·신청·등록하는 각종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각종 증명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

는 별표 2와 같이 감면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등과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가. 제안이유

- 택시관광 및 관광지 홍보,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 등의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관광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함(안 제4조, 별표)
- 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정함(안 제4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가. 본 조례안은 거창군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일부 조항을 정비 및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관광사업 및 지원기준에 거창투어 관광택시 운영을 추가하였고, 제4조의2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다. 검토결과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객 유치로 관광활성화를 도모 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 임**
- 1.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신규조문 대비표**
 - 3. 비용추계서**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관광사업 및 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별표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
- ③ 관광객 유치지원 등 재정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1.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4.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관광객 유치지원) ① 거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국내외 관광객 유치</u> <u>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홍보·판매하는 경우</u> <u>3.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p><u>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따른 대상,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u>제4조(관광사업 및 지원) ① 거창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 유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별표의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p> <p><u>② 군수는 관광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행정지원도 할 수 있다.</u></p> <p><u>③ 관광객 유치지원 등 재정지원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u></p> <p><u>제4조의2(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u> <u>2. 관광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u> <u>3.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u> <u>4.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u> <u>5.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u> <u>6.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을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u>

거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관광 택시 운영 등 관광사업 지원
- 나. 관련 조문: 제4조, 별표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11	30	30	30	30	131

3. 관련 의견

거창군 관광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및 거창투어 관광택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가.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10백만원
- 나. 관광택시운영 지원: 20백만원

작성자: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거창군 수승대만방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가. 제안이유

-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자의 주차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시설이용료 반환기준을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며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하는 등 수승대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자치조례와 위임조례를 함께 규정함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2) 주차장 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
- 3) 퇴장 사유를 추가함(안 제6조)
- 4) 주차장 및 시설 이용료 변경함(안 별표 1)
- 5) 시설이용료 반환기준 변경함(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가. 본 조례안은 수승대관광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나.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에 관광지 인근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퇴장사유를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등을 추가하여 수승대관광지를 원활하고 쾌적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다.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 임** 1.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규조문 대비표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를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승대 관광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설”이란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에 있는 주차장, 야영 데크·오토캠핑장·카라반캠핑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썰매장, 축제극장,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을 말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제4항을 제3항으로 제6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 제4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야영장, 오토캠핑장”을 “야영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제1항 각 호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

1. 관광지 거주자의 소유 자동차
2. 관광지 인근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
3.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다만, 야영장은 야영장 하나당 자동차 한 대만 면제한다)

4.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영장이나 야외 물놀이 시설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7. 야외 물놀이 시설에 입장 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외에 들어가는 경우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4. (생략) 5. “시설”이란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에 있는 주차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썰매장, 축제극장을 말한다.</p> <p><u>제4조(시설이용료) ①~② (생략)</u> ③ 야영장 이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썰매장 이용권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⑤ (항삭제 2015.6.10.) ⑥ (생략)</p> <p><u>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관광지에 거주하는 사람의 소유차량과 관광지 활성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u></p>	<p>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운영 및 관리 조례</p> <p><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수승대관광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4. (현행과 같음) 5. “시설”이란 수승대관광지(이하 “관광지”라 한다)에 있는 주차장, 야영데크·오토캠핑장·카라반캠핑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썰매장, 축제극장, 거창목재문화체험장을 말한다.</p> <p><u>제4조(시설이용료) ①~② (현행과 같음)</u> <u><삭 제></u> ③ 썰매장 이용권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p> <p><u>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면제할 수 있다.</u> 1. 관광지 거주자의 소유 자동차 2. 관광지 인근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자동차 3.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다만, 야영장은 야영장 하나당 자동차 한 대만 면제한다) 4. 그 밖에 관광지 활성화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p>

② (생 략)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오토캠핑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13. (생 략)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입장거절과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5. (생 략)

<신 설>

<신 설>

6.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썰매장, 야영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13.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입장거절과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5. (현행과 같음)

6. 야영장이나 야외 물놀이 시설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는 경우

7. 야외 물놀이 시설에 입장 시간(9시부터 18시까지) 외에 들어가는 경우

8. 그 밖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10.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8.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가. 제안이유

- 명예수당 대상자에게 효도권 이용비 및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비를 지원하여 그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참전명예수당 증액,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명예수당 대상자의 복지향상 지원사업 신설

(안 제7조의2·제7조의3)

가) 효도권 지원사업: 목욕 및 이용·미용에 드는 비용 지원

나)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비 지원

2) 명예수당 지급액 증액 및 지급대상 신설(안 제10조)

가) 증액 : 참전명예수당 월 10만원 ⇒ 월 15만원

나) 신설 :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월 10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가.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라는 규정 아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예우를 강화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명예수당 대상자 85세 이상인 분에게 목욕 및 이용·미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효도권 지원사업 신설, 명예수당 대상자에게 복지스마트워치 가입비 지원사업 신설, 명예수당 지급액 증액 및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규조문 대비표
3. 비용추계서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효도권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로서 85세 이상인 사람(이하 “효도권 이용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목욕 및 이용·미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효도권 이용자는 군과 협약한 목욕업소 및 이용·미용업소(이하 “효도권 지원사업자”라 한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효도권 지원사업자는 효도권 이용자가 그달 이용한 효도권 이용명부를 근거로 효도권 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효도권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1. 효도권 이용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효도권 이용명부의 허위작성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권을 이용하거나 효도권 비용을 지원 신청한 경우

제7조의3(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 스마트워치(심박수 모니터링, 위치추적, 명상휴식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에 주소를 둔 통신사에서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을 한 지원대상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

③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비용 신청 및 중단·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2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 나목) 중 “가목”을 “가목·나목”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나. 독립유공자유족 명예수당: 월 10만원

다.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7조의2(효도권 지원사업)</u>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로서 85세 이상인 사람(이하 “효도권 이용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목욕 및 이용·비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효도권 이용자는 군과 협약한 목욕업소 및 이용·비용업소(이하 “효도권 지원사업자”라 한다)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효도권 지원사업자는 효도권 이용자가 그달 이용한 효도권 이용명부를 근거로 효도권 비용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효도권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효도권 이용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효도권 이용명부의 허위작성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권을 이용하거나 효도권 비용을 지원 신청한 경우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7조의3(복지 스마트워치 지원사업)</u> ① 군수는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명예수당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 범위에서 복지 스마트워치(심박수 모니터링, 위치추적, 명상휴식 기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에 주소를 둔 통신사에서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을 한 지원대상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다.</p> <p>③ 복지 스마트워치 가입 비용 신청</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명예수당</p> <p>가.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u><신 설></u></p> <p>나. 보훈명예수당: <u>가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u>,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p> <p>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명예수당</p> <p>가. 참전명예수당: <u>월 10만원</u> <u><신 설></u></p> <p>나.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p> <p>2. 사망위로금: 50만원</p>	<p><u>및 중단·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2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u></p> <p>제10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①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명예수당</p> <p>가.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의 유족 나. <u>독립유공자유족</u> 명예수당: <u>독립유공자 유족</u></p> <p>다. 보훈명예수당: <u>가목·나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u>,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p> <p>2.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명예수당</p> <p>가.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나. <u>독립유공자유족</u> 명예수당: <u>월 10만원</u></p> <p>다. 보훈명예수당: 월 7만원</p> <p>2. 사망위로금: 50만원</p>

거창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효도권·복지 스마트워치 지원
- 2)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증액

나. 관련조문: 제7조의2·제7조의3·제10조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군비	644,162	887,923	887,923	887,923	887,923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효도권 지원비용: 60,000천원
2. 복지 스마트워치 지원비용: 25,000천원
3. 명예수당 증액: 110,800천원(제3회 추경예산 편성)
 - 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309,080천원
 - ⇒ 제3회 추경반영 금액: 100,000천원
 - 나. 전몰군경유족 및 미망인 명예수당: 138,000천원
 - ⇒ 제3회 추경반영 금액: 10,800천원
 - 다. 독립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20,400천원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강준석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10.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8.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가. 제안이유

- 거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의 규모, 회원 수, 활동양상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거창군에 맞는 지원을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2조)
 - 가)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와 읍·면분회 및 그 소속 경로당노인회
- 2) 지원사업을 정함(안 제3조)
- 3)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을 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가.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를 지원하여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내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하는 조례로서
- 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정하고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 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와 읍·면분회 및 그 소속 경로당노인회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비용추계서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와 읍·면분회 및 그 소속 경로당노인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 제2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관리·운영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
7.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 주관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 사업 지원

나. 관련 조문: 제2조(지원대상), 제3조(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439	450	450	450	450	2,239

※ 법령에 따른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사업은 제외

3. 관련 의견

거창군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를 지원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가. 대한노인회 거창군 지회 추진 사업 지원(16개사업): 439백만원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화장장려금 지급 제한 및 미흡한 절차를 개선하여 유족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임조례가 아닌 자치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2) 영아 등 화장을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3조·제4조)
 - 가) 신설 :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 나) 삭제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3)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 사유 신설(안 제6조제5항)

4) 용어 순화 및 조문 정비함(안 제3조·제6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가.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확장장려금 지원절차를 개선하여 유족 부담을 경감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확장장려금 지원대상을 추가(사산아 또는 주민 등록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확장한 경우)하였고, 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를 신설하여 기한내 신청하지 못하는 유족이 없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확장장려금 지급 제한 및 미흡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 임**
- 1.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조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 및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종전 제2호)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 제3호) 중 “군내”를 “군”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하 “화장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그 연고자

제4조제2호 중 “법령에 의하여”를 “법령 및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체”를 “시신”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사망자 및 신청인의 성명란에 “(남/여)”를 각각 신설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사망자 및 신청인의 성명 다음에 “성별”을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4.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군의 지원금을 말한다. 6.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한다. <p>제3조(지원대상) <신 설></p> <p>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p> <p>제3조(지원 및 지원대상)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하 “화장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현행	개정안
<p>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u>한함</u>)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p> <p>3. <u>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u>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u>화장을 실시한</u> 연고자(화장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u>한정함</u>)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p> <p>3. <u>군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u>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u>화장을 한</u> 연고자(화장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4. <u>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그 연고자</u></p>
<p>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p> <p>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p> <p>2. 그 밖에 다른 <u>법령에 의하여</u>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p> <p>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p>	<p>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p> <p>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p> <p>2. 그 밖에 다른 <u>법령 및 조례에 따라</u>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p> <p><u><삭제></u></p>
<p>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u>시체(개장유골)</u>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④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p>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 ① 화장장려금(기존분묘 개장후 화장한 경우 포함)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화장신고증명서,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 후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르고 추가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u>시신(개장유골)</u>자연장 증명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④ (현행과 같음)</p> <p>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p>

현 행	개 정 안
<p><u>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u><삭 제></u></p>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근거

가. 비용발생 요인: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그 연고자

나. 관련 근거: 제3조(지원 및 지원대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예외 규정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액은 연 3백만원으로 연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행복나눔과장 이 호 현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10.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8.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가. 제안이유

-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의 준공으로 공설공원묘지의 사용범위를 모든 군민으로 확대하여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공설공원묘지 사용기준 정비(안 제3조)

가) 신설 :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 사용범위 모든 군민으로 확대

2)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원칙 등에 따라 삭제(안 제10조·제11조)

가) 권한위임 :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별표에 규정

나) 시행규칙 : 「지방자치법」 제23조 중복·재기재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가. 본 조례는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 준공으로 군민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나. 주요내용으로는 사망자의 읍면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군민이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권한위임 조항은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별표에 위임사무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원칙 등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원활한 봉안당 사용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공설공원묘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조 제목 및 제1항·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장분묘로서”를 “지장분묘와 자연재해로 훼손 또는 유실된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로 한다.

제3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 ① 공설공원묘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사망 당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망자. 다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읍·면에 설치된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군수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은 사망 당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 대상자)</p> <p>① 공설공원묘지는 사망 시 거창군에 주소를 둔 경우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설공원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관할 읍·면이 아닌 관내 다른 지역 거주자가 사망하여 해당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할 공설공원묘지의 선정은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p> <p>③ 공설공원묘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개장 유골을 매장이나 봉안, 자연장을 하기 위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내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u>지장분묘로서</u> 그 분묘의 연고자가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원하는 경우 또는 그 공공사업부지에 사설묘지 설치·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료와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3조(공설공원묘지의 사용) ① 공설공원묘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망 당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망자. 다만, 사망자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읍·면에 설치된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군수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p>② 제1항제1호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창공설공원묘지 내 봉안당은 사망 당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면 사용할 수 있다.</p> <p>③ 공설공원묘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개장 유골을 매장이나 봉안, 자연장을 하기 위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관내 공공사업으로 발생하는 <u>지장분묘와 자연재해로 훼손 또는 유실된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u> 그 분묘의 연고자가 공설공원묘지 사용을 원하는 경우 또는 그 공공사업부지에 사설묘지 설치·신고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료와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한 후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10조(권한위임) 군수는 공설공원묘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9조에 따른 공설공원묘지의 <u>사용신청과 사용기간 연장신청</u> 2. 제4조에 따른 <u>사용료등의 징수</u> 3. 제5조에 따른 <u>사용료등의 감면</u> 4. 제7조에 따른 <u>유골반환 신청, 사용료등 반환</u> 	<p><삭 제></p>
<p>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9. 10.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8.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2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설치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설치·운영함을 명시함(안 제1조)
-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정함(안 제2조~제5조)

- 가) 설치 및 위치, 업무 및 시설, 지원대상, 조직
-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을 정함
(안 제6조~제9조)
- 4) 위탁운영을 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 가. 거창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역특성에 맞게 통합 설치 운영하고자 조례를 마련하는 것으로
- 나.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치 및 위치, 업무 및 지원, 지원대상, 조직 등에 대하여 규정,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 되어 있으며, 건강가정 구현과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통합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며 사회통합에도 이바지하는 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라.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1.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비용추계서**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거창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위치)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센터를 통합하여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 “건강가정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센터는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강남로1길 170에 둔다.

제3조(업무 및 시설) ① 센터는 건강가정법 제35조제1항 및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

② 군수는 센터에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족 및 다문화가족
2.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센터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과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상근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군수의 승인을 받으면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2.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시책
3.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1. 센터, 거창경찰서 또는 거창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 관계자 중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강가정 또는 다문화가족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센터 업무 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 군수는 건강가정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에 관하여 협약이 체결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위탁 운영비 지원

나. 관련 조문: 제10조(위탁운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군비	289	293	296	300	303	1,481

가. 국도비·군비 45:55 매칭사업

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상승분은 연 1.2퍼센트 적용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102백만원
2.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59백만원
3.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14백만원
4.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 지원: 12백만원
5.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턴 채용: 12백만원
6.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수당 지원: 11백만원
7. 다문화가족 지원강화: 70백만원
8.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사업: 2.5백만원
9.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사업: 6.5백만원

작성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거창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임양희]

가. 제안이유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체험활동, 학습 지원, 급식 지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위탁 단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탁대상 :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거창군청소년수련관 내)
- 2) 위탁범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 청소년수련관 2층 4개 공간(사무실 1, 교실 2, 창고 1)

3)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 (3년간)

* 직전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간)

4) 사 업 비 : 193,092천원 / 2021년 기준 (보조금 지원)

가) 여성가족부 지원 : 기 84,546(50%), 도 25,364(15%),
군 59,182(35%)

* 국비 보조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나) 그 외 군비 지원 : 24,000천원 내외 추가(별도) 지원

5) 위탁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6) 위탁조건

가) 위탁에 따른 지원금액은 예산범위내 교부가능한 금액으로 함

나)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침(여성가족부) 준수 등

7) 신청자격

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비영리 청소년단체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

8) 선정기준

가) 선정방식 : 담당부서에서 구성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심의

(1) 구 성 : 6~9인(군 소속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2) 절 차 : 평가 및 심의 → 최종 1개 단체 선정·의결

※ 평균 70점 이상 중 최고점 단체를 수탁자로 선정

나) 평가기준

(1) 수탁기관의 적격성(30점)

- 법인(단체)의 설립목적, 경영상태, 청소년관련사업 운영실적

(2) 사업운영의 전문성·책임성(50점)

- 청소년 관련사업 전문성, 사업계획 타당성, 운영전담인력 전문성 등

(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능력(20점)

- 지역사회 공신력 제고방안,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 등 방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가. 본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체험·학습·급식 등을 지원하는 거창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의 위탁기간 만료 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 공백 방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나. 위탁의 내용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3년이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부합 되는 등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탁월한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며

다. 내실있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정현수]

① 북상 병곡 ~ 동엽령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

1. 제안이유

- 폐쇄된 동엽령 등산로를 2018년 남덕유산국립공원공단에서 정비하였으나 마을 반대(주차장 없음)로 인해 아직 미개방 상태임
- 주차장 조성을 바탕으로 한 등산객 유입 및 마을 활성화 등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토지매입이 필요한 실정임

2. 주요내용

가. 취득(또는 처분) 개요

- 위 치 : 북상면 병곡리 742-3 등 2필지

- 편입면적 : 5,145m²
- 소 유 자 : 2명(김*배, 이*길)
- 사 업 비 : 1,300,000천원(토지매입 70,487천원/공시지가기준)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0.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천원)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m ²)	편입 (m ²)				
계				5,145	5,145	70,487			
취득	토지	북상 병곡 742-3	답	2,258	2,258	30,935	2022	북상 병곡~동엽령 등산로 주차장 조성	
취득	토지	북상 병곡 739-1	답	2,887	2,887	39,552	2022	북상 병곡~동엽령 등산로 주차장 조성	

※ 토지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다. 추진경과

- 2019. 8. : 재정지원사업 건의
- 2020. 3. : 관련 주민 민 이해관계인 면담
- 2021. 2. : 읍면순방 주민 건의

라. 향후계획

- 2021. 11. : 감정평가 실시
- 2021. 1. ~ 3. : 보상완료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2. 4. ~ 10. : 사업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주차장 등 인프라 시설 조성으로 외부 관광객 유입 등
마을소득 증대 및 활성화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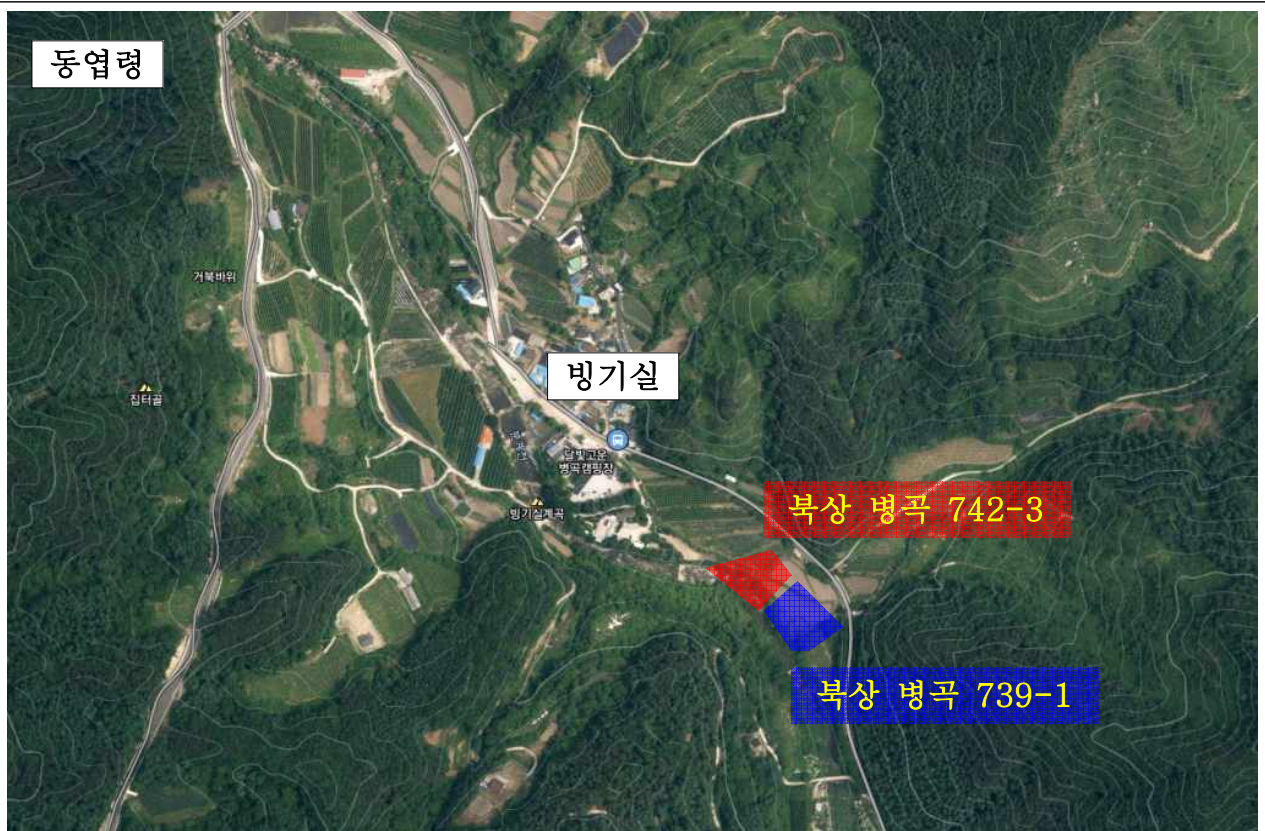
3. 관계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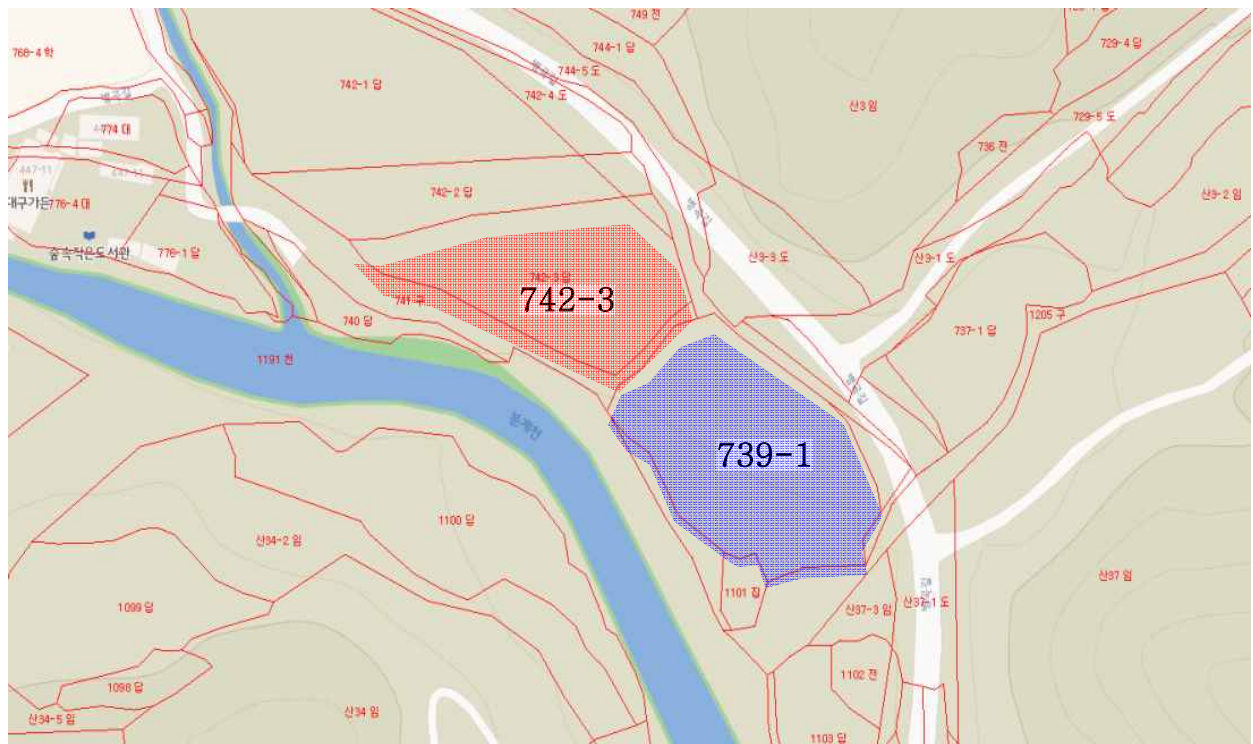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따로붙임

위치도 및 연황사진

□ 위치도



사진설명 : 북상면 병곡리 742-3, 739-1



사진설명 : 북상면 병곡리 742-3, 739-1 일원 지적도

□ 현황사진



사진설명 : 북상면 병곡리 742-3



사진설명 : 북상면 병곡리 739-1

②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저수지 신설)

1. 제안이유

- 공익사업인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전 사업대상 토지를 협의 취득하여 저수지 조기 착공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위 치 :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377 등 47필지
- 취득물건 : 토지(47필지) A=34,529m²
- 사업기간 : 2018. 12. ~ 2025. 12.
- 사 업 비 : 7,200백만원
- 사업내용
 - 저수지 1개소(L=104.9m, H=22m), 양수장 1개소(L=300m)
 - 이설도로(농로) L=420m, B=4m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 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토지 가액	재산 소유자
		소 재 지	지 목	면적	편입 예정면적	공사자가		
계					147,674	34,529		122,062,687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7	전	165	165	3,550	585,750	신영춘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6	전	793	793	3,550	2,815,150	신동민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산40	임	10,116	1,030	345	355,350	한화영외인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38	전	139	139	3,550	493,450	양치명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39	전	813	813	3,900	3,170,700	신현출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0	전	350	350	3,550	1,242,500	신현출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토지 가액	재산 소유자
		소재지		지 목	면적	편입 예정면적	공차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1	전	707	707	3,550	2,509,850	박석천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2	전	433	433	3,740	1,619,420	신귀균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3	답	192	192	6,460	1,240,320	평산신씨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4	답	440	440	6,460	2,842,400	평산신씨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5	천	40	40	1,120	44,800	신삼권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4	답	311	311	6,460	2,009,060	신영식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5	답	820	820	6,460	5,297,200	신영식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6	답	936	936	6,460	6,046,560	신영식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32	답	1,160	1,160	5,360	6,217,600	평산신씨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30	전	383	383	3,550	1,359,650	신현준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33	답	2,955	575	3,610	2,075,750	신동구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29	전	76	76	3,550	269,800	신경철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28	전	2,102	2,102	3,550	7,462,100	신영철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7	답	916	916	6,460	5,917,360	신도철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31	답	1,332	1,332	5,360	7,139,520	신상옥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23	전	717	717	3,550	2,545,350	신동봉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22	답	846	846	6,460	5,465,160	신동윤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8	답	1,319	1,319	6,460	8,520,740	신동환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49	답	1,868	1,868	6,460	12,067,280	신동열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50	답	1,898	1,898	6,460	12,261,080	신상용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20	임	3,250	593	820	486,260	임준석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51	묘	370	370	2,010	743,700	양경운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799	답	595	595	6,460	3,843,700	신상용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800	전	496	496	3,550	1,760,800	신도철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산174	임	24,496	1,088	490	533,120	박원종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산177	임	17,653	5,521	516	2,848,836	평산신씨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산178	임	8,926	2,115	345	729,675	박현욱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산175	임	40,066	1,356	466	631,896	엄철중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80-1	답	297	6.0	10,500	63,000	차석윤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442	답	401	5.0	8,040	40,200	신동권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82-1	도	218	2.0	1,910	3,820	거창군 외인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82-2	묘	289	52.0	2,080	108,160	신철외인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69-7	도	33	33.0	1,350	44,550	신현수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69-6	도	30	9.0	1,350	12,150	신현수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0-4	도	63	63.0	1,350	85,050	진환례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0-3	도	79	27.0	1,350	36,450	신정식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산176	임	13431	890.0	710	631,900	차만규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1-2	답	2566	524.0	9,700	5,082,800	차석열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토지 가액	재산 소유자
		소재지		지 목	면적	편입 예정면적	공차자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1-1	천	129	129.0	1,120	144,480	신동열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87	답	1886	114	9,360	1,067,040	신정식
취득	토지	신원면	와룡리 1378-1	답	573.0	180	8,840	1,591,200	신영춘

다. 추진경과

- 2018. 12. 25. : 비극저수지 지표수보강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착수
- 2019. 8. 6. : 타당성조사용역 완료/와룡저수지 신설
- 2020. 2.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0. 3. 11.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0. 5. 18.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0. 10. 23.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통보(낙동청→군)
- 2020. 11. 9. :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
- 2020. 11. 17.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서 제출(군→낙동청)
- 2021. 7. 2.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 7. 7. :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개최(최종)

라. 향후계획

- 2021. 8. : 보상토지조서 작성 등 보상계획 수립
- 2021. 9. : 감정평가
- 2021. 10. : 협의 보상 추진
- 2022. 2. :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계획 고시
- 2022. 3. : 공사 착공
- 2025. 12. : 공사 준공

마.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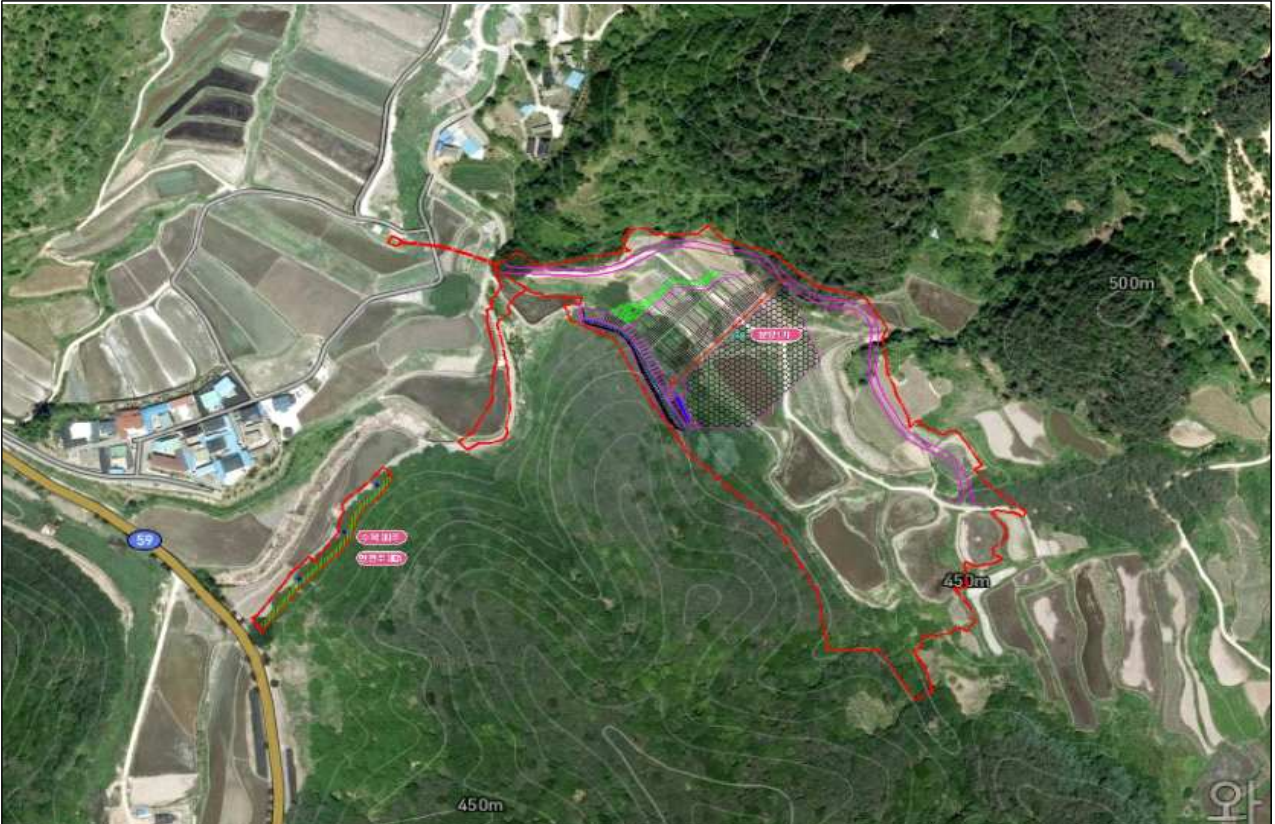
- 신원면 와룡리, 대현리 일원에 신규 저수지를 조성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작물 생산 증가에 따른 소득증대에 기여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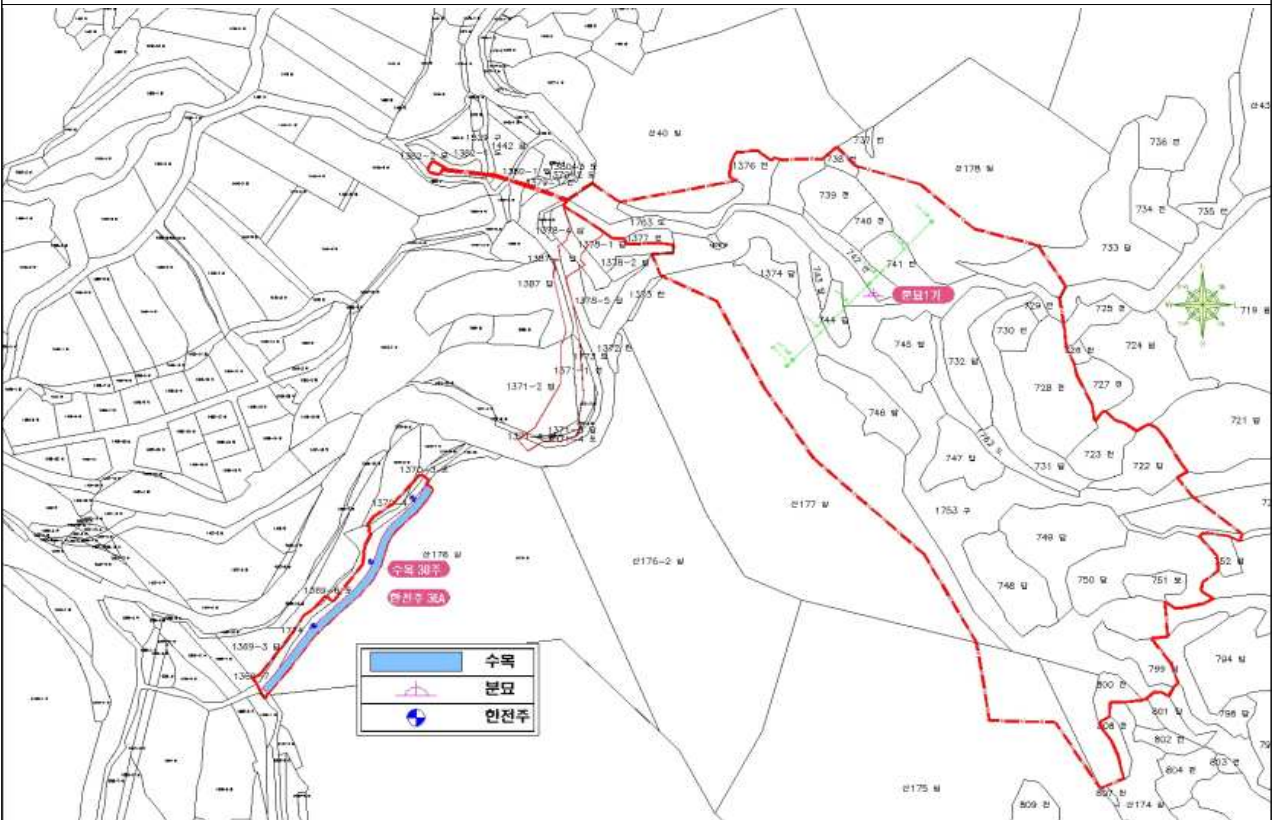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따로붙임

위치도 및 지적도



사진설명 :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377번지 등 47필지



사진설명 : 거창군 신원면 와룡리 1377번지 등 47필지

③ 강남 배수지 신설 사업

1. 제안이유

- 강남지역 지방상수도 배수지 신설로 거창읍 송정리, 장팔리 일원 고지대 지역 수리적 안정성 확보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 「거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25년까지 마리면 소곡, 장백 일원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일원
- 취득물건 : 토지(3필지) A=2,208m²
- 사업내용
 - 사 업 명 : 강남배수지 신설사업
 - 사업내용 : 배수지 신설 800ton
 - 사 업 비 : 6,000백만원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 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산의 표시					토지 가액	재산 소유자
		소 재 지	지 목	면적	편입 예정면적	공차자		
계				7,810	2,208		46,769,200	
취득	토지	거창읍 장팔리 708-2	전	4,824	1,178	20,900	24,620,200	이명술
취득	토지	거창읍 장팔리 708-1	전	408	408	20,900	8,527,200	이명술
취득	토지	거창읍 장팔리 708-14	전	2,578	622	21,900	13,621,800	이명술

다. 추진경과

- 2021. 3. :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착수
- 2021. 6. : 거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환경부 승인

라. 향후계획

- 2021. 10. : 용역 준공 및 실시계획인가
- 2022. 1. : 공사 착공
- 2023. 12. : 공사 준공

마. 기대효과

- 거창지방상수도 수리적 안정성 확보 및 장래 각종 개발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깨끗한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및 생활환경 개선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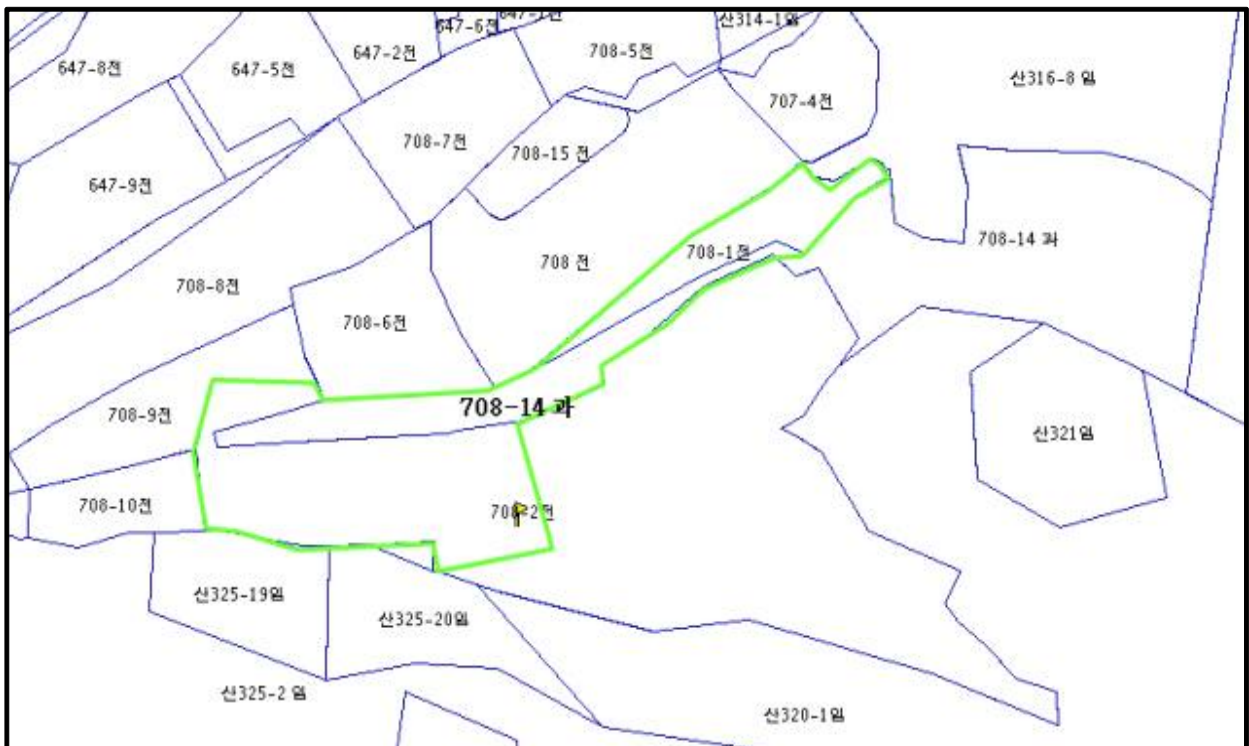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따로붙임

위치도 및 지적도



사진설명 : 거창읍 장팔리 708-1 등 3필지(708-2, 708-14)



사진설명 : 거창읍 장팔리 708-1 등 3필지(708-2, 708-14)

4 거창 배수지 증설 사업

1. 제안이유

- 「거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2035년 용수수요량에 대비하여 배수지 시설용량을 증설하고자 함

※ 현재 7,366m³ ⇒ 필요 10,366m³ (증설3,000m³)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일원
- 취득물건 : 토지(7필지) A=6,183m², 건물(1동) A=65.49m²
- 사업내용 : 거창배수지 증설 3,000ton
 - 사업명 : 거창배수지 증설사업
 - 사업내용 : 배수지 증설 3,000ton
 - 사업비 : 4,000백만원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 : m², 원)

구분	재산종별	재산의 표시					토지가액	재산소유자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예정면적	공시지가		
계					6,248.49	6,248.49		116,019,400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458-1	과수원	413.00	413.00	16,500	6,814,500	이영지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458-2	잡종지	217.00	217.00	28,600	6,206,200	이영지
취득	건물	거창읍 양평리 458-2	주택	65.49	65.49	20,000,000	20,000,000	이영지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458-4	과수원	556.00	556.00	14,000	7,784,000	이영지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458-7	도로	72.00	72.00	6,850	493,200	이영지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458-14	과수원	652.00	652.00	10,400	6,780,800	이영지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458-16	잡종지	162.00	162.00	15,900	2,575,800	이영지
취득	토지	거창읍 양평리 458-17	임야	4,111.00	4,111.00	15,900	65,364,900	이영지

다. 추진경과

- 2021. 3. : 실시설계 및 군관리계획 결정용역 착수
- 2021. 6. : 거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환경부 승인

라. 향후계획

- 2021. 10. : 용역 준공 및 실시계획인가
- 2022. 1. : 공사 착공
- 2023. 12. : 공사 준공

마. 기대효과

- 배수지 용량 증설에 따른 체류시간(12시간 이상) 확보로 정수장과 송수계통 사고 및 수질사고 등 비상시에도 수요자에게 단수 없이 수돗물을 급수할 수 있는 공급의 안정성 확보

3. 관련법규 및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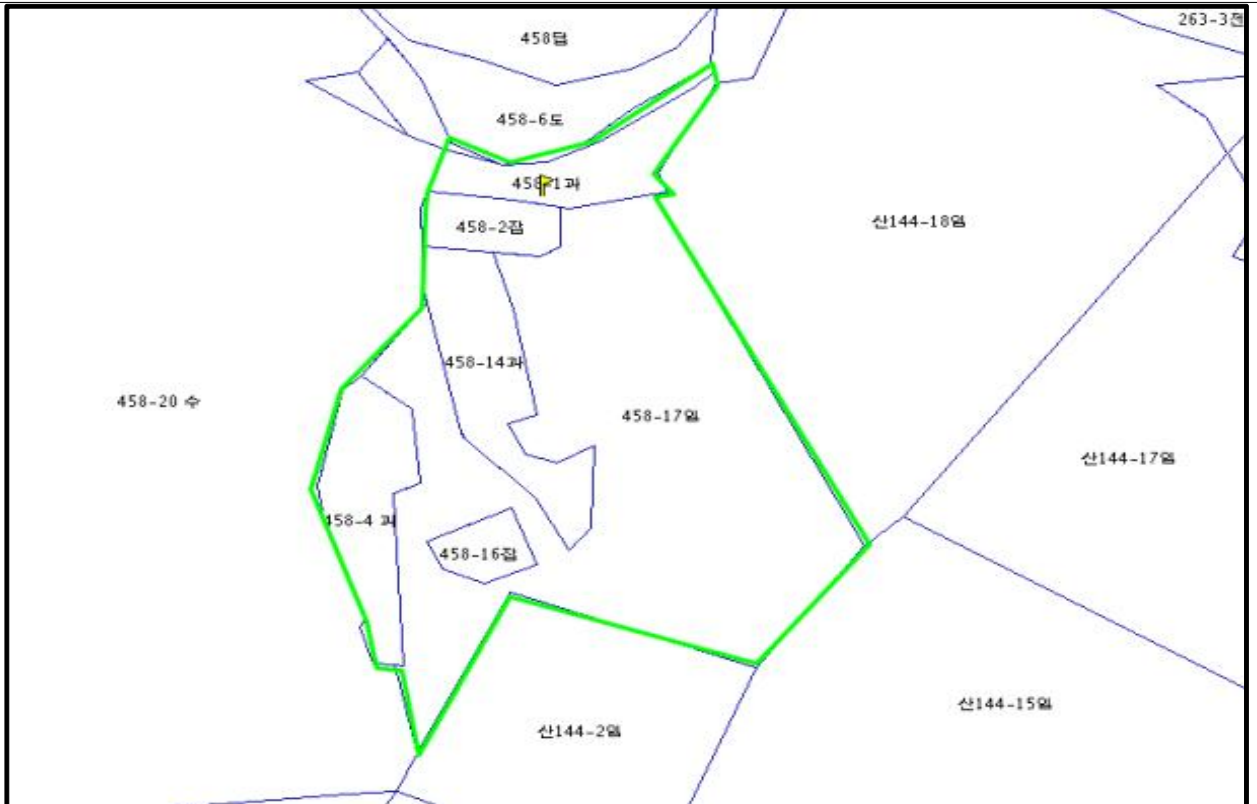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따로붙임

위치도 및 지적도



사진설명 : 거창읍 양평리 458-1 등 7필지



사진설명 : 거창읍 양평리 458-1 등 7필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에 의거,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① 북상 병곡 ~ 동엽령 등산로 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 가. 북상 병곡~동엽령 등산로를 개방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차장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으로
- 나. 외부 관광객 유입과 마을 활성화 등 주민숙원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검토됨

②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저수지 신설)의 건은

- 가. 신원면 와룡리, 대현리 일원에 공익사업인 와룡지구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사업대상 토지를 협의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 나.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로 영농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의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③ 강남 배수지 신설 사업의 건은

- 가. 거창읍 송정리, 장팔리 일원 고지대 지역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방상수도 배수지 신설을 위한 장팔리 일원 토지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며

나. 배수지 신설로 거창지방상수도 수리적 안정성 확보 및 장래 각종 개발계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경제 발전 도모와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됨

④ 거창 배수지 증설 사업의 견은

가. 「거창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2035년 용수수요량에 대비하여 배수지 시설용량을 증설하기 위해 거창읍 양평리 일원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배수지 용량 증설로 비상시에도 단수없이 수돗물을 급수할 수 있는 공급의 안정성이 확보됨에 따라 본 사업에 필요한 부지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설화 구전관 」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9. 10.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8. 24.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과장 조호경]

가. 제안이유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사업인 「신라촌 조성을 통한 마을콘텐츠 구축」 사업으로 조성한 설화 구전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시설명 : 설화 구전관
- 2) 위치 : 거창읍 가지리 1433외 1필지

3) 주요시설

(㎡)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부대시설	비고
3,212	381.58	253.18	지상 2층	주민창의마당 주차장, 벽화거리 등	

4) 위탁대상 사무

- 설화 구전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 작은 도서관(63㎡), 북카페(80.5㎡), 다목적홀(63㎡), 벽화거리, 주민창의마당 등 운영 및 유지관리
- 설화 구전관 시설물 관리 위탁 및 사용료 관리

5)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3년 이내

6) 수탁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국경마을 신라촌

7) 선정방법 : 수의계약

8) 그간 추진현황

- 설화 구전관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 2021. 7.

9) 향후계획

- 수탁기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2021. 11.
- 위·수탁계약 체결 : 2021. 12월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중호]

가. 본 동의안은 신라촌 조성을 통한 마을콘텐츠 구축사업으로 조성한 설화구전관 준공에 따른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을 위하여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나. 위탁의 내용은 설화구전관 시설물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되며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자 단체는 영농조합법인 국경마을 신라촌으로 농산어촌의 계획적인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설화 구전관을 시설관리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며

다.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위탁 관리·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장애인 이동목욕 차량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9. 10.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8. 24.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8. 24.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5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021. 9. 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가. 제안이유

- 중증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의 개인위생 관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운행 중인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사업명 : 거창군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 2) 사업량 : 목욕차량 1대, 이용자와 차량 운행 관리
- 3) 위탁대상 사무
 - 목욕차량 위탁운영(1대)

- 위탁차량 관리와 차량운행 업무 등 사무관리
- 목욕차량 이용자 선정 등 관리

4) 그간 운영상황

- 위탁기관 : 거창군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
- 위탁기간 : 2019. 3. 1. ~ 2021. 12. 31.
- 위탁차량

차 종	규 격	차량번호	연 식	비 고
이동목욕차	내장탑차	99부4930	2021	

※ 2021. 7. 차량 교체

5) 향후일정

- 민간위탁 기관 재지정
 - 위탁기관 : 거창군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관장 김인)
 - 위탁기간 : 2년(2022. 1. 1. ~ 2023. 12. 31.)
 - 위탁내용 : 목욕차량(1대) 운행서비스 사무업무·관리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종호]

가. 본 동의안은 중증장애인과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해 운영중인 거창군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나. 위탁의 내용은 이동목욕차량(1대) 운행서비스와 사무업무 관리 등에 대한 것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부합되고 위탁기간은 2년이며 수탁기관은 거창군삶의쉼터 장애인복지관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검토됨

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